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 902 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07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2. 제안이유

-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‘남북협력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남북협력 핵심과제를 지속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한시기구의 존속기한(안 부칙 제2조)

-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 까지 실시·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,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(3년간)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) 【참고자료1】 .
- 현재 서울시는 ‘남북협력추진단’과 ‘지역발전본부’, ‘문화시설추진단’ 등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중 ‘지역발전본부’와 ‘문화시설추진단’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1년씩 연장되었음.
- 남북협력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하여 지난 7월 26일 완료되어, 1년 연장(2019. 11. 1. ~ 2020. 10. 30)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별도로 제출되었음.

〈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〉

부서명	존속기한	주요업무
지역발전본부	2019.07.01.~2020.06.30	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
문화시설추진단	2019.08.19~2020.08.18	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
남북협력추진단	2018.11.01~2019.10.31	서울-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조성을 강화하고 민간·정부·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

다. 한시기구의 연장 필요성

- 남북협력추진단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·번영의 토대가 확산되고, 남북교류 수요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 11월 남북교류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었음.
- 이후 ‘서울-평양 도시’ 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협의와 추진이 용이한 사업에 집중하면서, 비정치적 분야의 실행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과 시민이 공감하는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음.
-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,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평양, 평안도, 황해도, 함경도 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식량과 물품 지원¹⁾과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으며,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 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²⁾ 등을 추진하였음.

1) 17억 3천만원 규모의 밀가루 3,260톤, 온실용 비닐 24톤, 콩기름 70톤 상당.

2) 영유아 3만 3천명에게 영양 강화식품 6개월 제공 분량 : 영양 강화식품은 시리얼·비스킷으로 WFP가 북한 내 11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며, WFP 평양사무소 주관으로 생산시설·분배현장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음.

- 또한, 국내·외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의약품 긴급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과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³⁾을 추진하였음.

【 주요 대북협력사업 추진실적 】

- ◇ 2032서울-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하여 통일부, 문체부,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상시협의 채널 구축('19.2월~)
- ◇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'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' 구성·운영('19.1월~)
- ◇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과 협력하여 대북식량 지원 추진('19.6월~)

- 향후에도 '서울-평양 도시협력 포럼'을 통한 실질적 남북협력 과제 발굴 등 문화, 경제, 사회, 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【 향후 대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】

- ◇ 서울-평양 '도시협력 포럼'을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 과제 발굴
- ◇ 통일축구대회 정례화, 교향악단 합동공연, 문화유산 답사 등 문화, 예술·체육 교류 활성화
- ◇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, 스마트 시티 협력사업, 산림·환경, 보건·의료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 및 경제 개발, 인도적 지원 등 협력분야 확대 추진

- 이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속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'남북협력추진단' 기구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됨.

3) 시민공모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확대 : 청년평화아카데미 및 민간단체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,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, 제3차 남북정상 회담 지원 및 홍보(12건) 등.

- 다만,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·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남북협력 추진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.
- 특히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발사가 재개되고 대남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음.
-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관계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맞춰 서울-평양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,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단위로 단편적으로 연장하기 보다는 정규기구로의 편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.
- 한편, 이들 한시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4개의 임시 범외기구⁴⁾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운영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전문위원	연락처
주우철	02) 2180-8054

4)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임시 범외기구 : 국제협력관(2013.12.02), 대기기획관(2011.11.29), 재생정책 기획관(2012.09.28), 주거사업기획관(2011.11.29)

【참고자료1】

관 련 법 령

▣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,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